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 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7년 6월 18일

제안자 : 송옥순 위원 발의

□ 수정이유

- 기금의 조성 중 "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, 물품, 기타재산"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취지에 따라 삭제
-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줄임
- 위원회 회의 중 서면심의 의결을 금지하고 정식 의결 절차 준수토록 함

□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3조 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함
- 안 제5조 제1항중 "15인 이내의" 를 "13인 이내의"로 함
- 안 제9조 제3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함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(기금의 조성) 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안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제1항중 "15인 이내의"를 "13인 이내의"로 한다.

안 제9조(회의) 제3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